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7 선고 2020나3215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7 선고 2020나3215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33001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변론 종결** 2021. 8. 17.

**판결 선고** 2021. 9. 7.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33001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51,511,85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511,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후에 "(이 법원의 I조합, J조합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는 제1심법원의 P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와 달리 C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채무액 합계 413,954,000원을 채무에서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사 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F조합, 법원행정처, P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J조합, 제주세무서, F조합, I조합, H조합, G조합,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면의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평가사 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한편" 이후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한편,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44,590,000원,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8. 17.까지 917일 동안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6,803,711원 등 합계 61,393,710원이다. 결국 원고의 채권액 61,393,710원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었던 부분의 가액인 51,511,850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백대현**

**판사이재민**

**판사고병용**

**별지**